

## 2019년도 제1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8. 9.(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전용준 위원(분과위원장), 박성호 위원, 임진모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2건(안건번호 제2019-89485호~89584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음악과 만화에 관한 사안들입니다. 예컨대, 음악 "비가 내리는 날에는" (가수 윤하), 음악 "그대라는 시" (가수 태연), 음악 "헤어져줘서 고마워" (가수 벤) 등과 만화 "기숙학교 줄리엣", 만화 "깨끗하게 해주시겠어요?", 만화 "넥스트 라이프" 등입니다. 이러한 음악과 만화에 대한 불법 복제 전송물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B 위원 : 본건 심의대상은 음악, 만화 등의 불법복제물로서,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고 기타 저작권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없기 때문에,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C 위원 : 89485호에서 89584호까지 100건의 경우 최신 가요 팝 그리고 만화에 대한 무단 복제 전송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

2019년 제147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9.

분과위원장 전용준

위원 박성호

위원 임진모